

청주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2가단519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변 론 종 결 2022. 8. 26.

판 결 선 고 2022. 9. 1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4,647,456원 및 그 중 44,426,118원에 대하여 2021. 10. 20.부터 2022. 6.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0. 12. 14. 체결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7.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4,767,268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4,767,268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 피고 A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10. 21.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24. 10. 1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D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20. 3. 20.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 20,000,000원, 보증기한 2025. 3. 17.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의 위 신용보증 하에 E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피고 A이 2021. 4. 21. 위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21. 10. 20. 각 대출원리금 채무의 대위변제로 D은행에게 25,830,419원을, E은행에게 19,342,517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각 대위변제금 중 일부씩을 회수하여, 미수 구상금은 D은행 관련 25,251,314원, E은행 관련 19,174,804원의 합계 44,426,118원이 되었다.

○ 원고는 각 구상금채권보전을 위해 법적절차비용 221,338원을 지출하여, 구상금 채권은 44,647,456원(= 44,426,118원 + 221,338원)이 되었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 이후 연 10%이다.

나.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 및 경매절차의 경위 등

-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2. 14. 채권최고액 2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20. 12. 16.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 다른 근저당권자 F조합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G이 2022. 6.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취득하였고,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 위 법원은 2022. 7. 27. 배당기일을 열어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95,509,243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고, 1 내지 5순위로 최우선소액임차인, 교부권자,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등에게 각 채권액을 배당한 후 6순위로 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잔여액 4,767,26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고는 채권자로서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22. 7. 29. 이 사건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44,647,456원(구상금) 및 그 중 44,426,118원(구상금 중 법적절차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6.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인 2021. 10. 20.(각 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일)에 성립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0. 12. 14. 당시 이미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의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A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1. 4. 21.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결국 위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당시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A에게 2020. 8. 13.부터 2021. 1. 18.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A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어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살피건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가 피고 B의 위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이 당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달리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깨뜨리고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나아가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되었고, 배당기일에 피고 B에게 4,767,268원이 배당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 B의 위 배당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므로, 위 배당표를 그 중 피고 B의 위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위 4,767,268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

1)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배당할 금액의 부족으로 수익자(근저당권자)에게 채권액의 일부만 배당되었다고 해서 그 배당액의 한도 내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일부 취소하면, 취소되지 않은 부분의 근저당권이 남게 되어 그 남은 부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당초의 미배당액이 다시 배당되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배당액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할 것이 아니라 전부 취소해야 한다.